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 함정요원 (순경) -

해 사 법 규

해설 : 우보연 교수

1. 도선사가 승선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해양경찰관이 「해사안전법」에 따라 운항자 등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음주측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도선사	㉡ 당직 이등항해사	㉢ 기관장
㉣ 선장	㉤ 조리장	㉥ 당직타수

- ① 5명 ② 4명 ③ 3명 ④ 2명

[해설] ②

해사안전법(법 제41조)상의 음주측정 관련 문제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에 따른 도선을 해서는 아니된다.

보기에서 선박운항 및 도선과 관련된 자는 도선사, 당직 이등항해사, 선장, 당직타수가 해당되므로 총 4명이 이해 해당된다.

2. 다음 중 「선박법」상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해설] ③

선박법상의 국기게양의무(시행규칙 제16조)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선박은 다음의 경우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 대한민국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보기③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군으로 변경해야 한다.

3. 다음 내용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②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③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④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해설] ③

해양환경감시원(시행령 제90조 제2항)의 직무에 대한 문제로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를 구분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제89조제1항에 따른)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제9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보기 ③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포함된다.

4. 다음의 甲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급 공무원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여야 중앙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이 되는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甲은 과거에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였으며, 2019년 4월 13일 처음으로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해양수산행정 분야에 임용되었다.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해설] ①

중앙심판관의 자격기준(법 제9조의 2)에 대한 문제이다.

지문에서 지방심판원 심판관으로 3년, 해양수산행정 분야에 현재 임용되었으므로, 양자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이 되면 심판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년만 더 근무를 하면 중앙심판관이 될 수 있다.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5.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야간운항장비가 아닌 것은?

- ㉠ 라디오
- ㉡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 야간 조난신호장비
- ㉣ 통신기기
- ㉤ 전등
- ㉥ 항해등
- ㉦ 초단파대 무선 설비
- ㉧ 나침반
- ㉨ 레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②

야간운항장비(시행규칙 제18조)에 대한 문제로 지문에서 라디오, 초단파대무선설비, 레이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 1. 항해등 | 6. 구명튜브 |
| 2. 나침반 | 7. 소화기 |
| 3. 야간 조난신호장비 | 8. 자기점화등 |
| 4. 통신기기 | 9. 위성항법장치 |
| 5. 전등 |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

6.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은?

-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① 140 ② 150 ③ 160 ④ 170

[해설] ④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4)에 관한 문제로, 구명조끼는 120%(20은 소아용), 구명부환은 30%이므로 지문에 들어가야 할 수는 순서대로, 120, 20, 30 으로 그 수의 합은 170이 된다.

구분	설비
1. 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 이상은 어린 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다. 핸드레일 라.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마.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7.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속여객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항시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화물운반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인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①

교통안전특정해역 설정(법 제10조)에 관한 문제이다. 옳은 지문은 보기①번이고 틀린 지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보기 ②와 ③ : 지문의 내용은 맞으나 그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서장이다. 보기④의 경우 예인선의 사용은 조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않고, 안내선의 사용은 명할 수 있다.

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이다.
 ㉢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②

수상레저안전법 관련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지문 ㉡은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따라서 전후 3개월이라고 표현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지문 ㉢은 변경등록과 관련된 내용(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으로 변경등록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 외교부장관 ㉡ 울산광역시장 ㉢ 충청북도지사
 ㉣ 해양경찰청장 ㉤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① 5명

② 4명

③ 3명

④ 2명

[해설] ③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제25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처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도지사는 제외) 및 특별자치도

지사

- 해양경찰청장
-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시행령 제6조에 따른)

따라서 지문에서 울산광역시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가 이에 속한다.

10.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 신고 의무와 관련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 사고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甲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였다.
- ② 선저폐수 이송 작업 중 실수로 이를 해양에 배출한 기관사 乙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배출 사실을 신고하였다.
- ③ 인천 덕적도 앞 바다에서 조업 중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닻자망 어선의 선장 丙은 관련 사실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 ④ 기름 저장시설 관리자 丁은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바다로 배출된 것을 발견하고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10. ③

오염물질 배출시의 신고에 대한 문제로 법 제63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보기③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11. 다음은 해양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숫자들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사망 등으로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해사안전법」상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 - 6, ㉡ - 6, ㉢ - 7

② ㉠ - 6, ㉡ - 1, ㉢ - 30

③ ㉠ - 3, ㉡ - 6, ㉢ - 7

④ ㉠ - 3, ㉡ - 1, ㉢ - 30

14.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에 따라 설립된 (㉡)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는?

	㉠	㉡	㉢
①	선박안전법	해운조합	관리이사
②	해운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조정자
③	해운법	해운조합	사업자
④	선박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운항관리자

[해설] ④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법 제22조 2항)에 관한 문제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15. 「도선법」상 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 선박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의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은?

㉠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개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① 1,012 ② 1,013 ③ 812 ④ 813

15. ①

강제도선(법 제20조)과 관련된 문제로 강제도선구는 총 12개이다.

강제도선 대상선박은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이다.

지문에 순서대로 들어가야 할 숫자는 12, 500, 500 이므로 그 합은 1012이다.

16.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이 행하되, 미리 ()의 심의를 거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	㉡	㉢
①	국방부장관	국무회의	대통령
②	외교부장관	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장관회의	대통령
④	해양경찰청장	국무회의	국무총리

[해설] ①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제7조의 내용으로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이 아닌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 ②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③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④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

[해설] ④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법 제3조)에 대한 구분 문제이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나. 해양과학 조사
 -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보기 ④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에 속한다.

18.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을 거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6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3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③	6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④	3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설] ①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에 대한 문제(법 제6조)이다.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9.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상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강화도	㉡ 대청도	㉢ 마라도
㉣ 백령도	㉤ 완도	㉥ 울릉도
㉦ 연평도	㉧ 진도	㉨ 추자도 ㉩ 한산도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해설] ①

입출항 신고기관 설치에 대한 문제로 법 제9조 제3항에 관련한 내용이다. 신고기관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입출항 및 조업에 관하여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20. 다음 중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 ㉠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낚시어선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해설] ②

위치발신장치 설치제외 대상선박(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대한 문제이다.
 지문에서 낚시어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설치제외 대상선박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②번 4개이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
5. 서해특정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